

【사건번호 2023-037】 국토교통부 이륜차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 대상 공공데이터: 이륜차 등록 데이터
- 신청목적: 이륜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서비스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륜차 정보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를 제공한다.
 - * 이륜차의 차량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 브랜드, 모델, 제원, 환경검사일, 등록일, 최초등록일(이상 7개 항목) 등의 데이터가 현재 서비스 중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 개방플랫폼의 '첨부형 API 서비스'와 같이 제공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 신고 등의 신고(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관련 데이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음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0항)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관리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HW/SW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 즉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처리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관리하는 원천시스템임
- 피신청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개방체계(자동차종합정보개방플랫폼)를 구축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소유자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종합

정보 첨부형 API**”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이륜차 정보는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

* 정보주체에게 본인인증 페이지를 호출한 후, 소유자 이름,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진행

**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API 및 자동차종합정보 배치성자료 이용가이드 참조

- 해당 API는 별도의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해당 API는 자동차 기본정보, 제원정보, 정비이력, 성능점검, 차대번호 등의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첨부형 API 이용신청 시 제공받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음
- 첨부형 API 서비스를 통해 이륜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방항목 선정, 시스템 기능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o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함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o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공공데이터법 제4조 및 제17조제1항)

- 첨부형 API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도 이 사건 데이터의 비공개성 등에 대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가질 뿐,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위원회는 OPEN API와 관련한 사건에서,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위원회 조정사례 참조)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자동차종합정보 개방플랫폼의 첨부형 API' 서비스와 같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공거부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해 거부 결정을 하였으나,
 - 현재 이륜차 등록 대수가 약 2백 2십여만대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차량 거래 정보, 사고 이력 정보, 성능 정보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이륜차의 민간 유통 채널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륜차의 도난, 사고, 거래 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 심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 이 사건 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사회적 현안 해결,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 활용되도록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조속히 제공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한다.

5.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